

제438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20일(목)

장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기획재정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6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6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안건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양당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협의를 계속하셔서 조속히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회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고, 오늘 회의는 오전에 주질의를 진행하고 질의가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오후에 본회의 상황을 보면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배준영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오늘 일정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닙니다. 여야를 서로 존중하자는 국회법 제49조 2항의 정신을 무력화했습니다. 우선 소위 구성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휴기간 내내 합의를 위해 대안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재위 위원장을 맡은 최근 세 번 모두 예결위 위원장은 민주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재경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예결소위원장은 가져가겠습니다. 다수당의 몫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때는 왜 소수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각각 맡았는지 민주당은 설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예결소위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지 않은당이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도 맞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본회의가 있는 날 아닙니까? 안건이 총 70건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의총도 있습니다. 을지훈련까지 있습니다. 이런 바쁜 날에 일부러 전체회의를 오전 10시에 열어서 통과의례식으로 대충 태우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더군다나 오늘 회의는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첫 전체회의입니다. 이렇게 회피해도 됩니까? 이렇게 파트너인 야당도 무시하는 여당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재경위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구윤철 부총리는 최악의 이번 세제개편을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졸속 세제개편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청년들의 혜택은 몰수하며 세수만 올리려는 세제개편으로는 국회의 아니, 국민의 동의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승래 위원장님이 2023년 과방위 간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회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가 아닌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끼리 하는 당정회의로 규정하고 초대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지사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결산 심사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소위 구성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먼저 마무리하고 전체회의 일정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다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다른 일정도 좀 양보하시더라도 위원장님의 옳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오기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저희도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재경위원회 현황을 보면 5월 30일 개원했고 7월 23일에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상당

히 낮은 거지요. 그리고 7월 29일에 야당 간사 선임을 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소위 구성 협상을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는데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소위 구성을 못 해서 여당 간사로서 정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재경위에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관련된 변혁의 시대이고 그리고 AI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 관련된 초과세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됩니다. 또 K자형 양극화 심화도 재경위의 주요한 의제입니다. 이미 정부에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가안정, 가계부채, 공공기관 운영·개선 등 의제가 다양합니다.

이미 소위 구성에 대해서 제1소위는, 조세소위는 여당에서, 제2소위는 국민의힘에서 맡고 하자라는 데 대해서 기본적인 공감은 있습니다. 예결소위 구성과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위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사례를 죽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17대 국회부터 지난 20년 동안 재경위원회 또는 기재위원회 소위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도부터 해서 한 4년 동안 저희가 다수당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경소위는 그다음 교섭단체 대표에서 맡았었고 예결소위원장은 통상 다수당이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2년 회의록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기사는 2022년 11월 달 기사입니다. 그때까지 기재위에서 그 당시에 소위 구성 논쟁이 있었고 여기 계신 김상훈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그 당시에 이 논쟁 같이 하셨습니다. 논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유일한 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이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게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니다. 여소야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속에서 실제 범야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결소위원장을 야당 쪽에서 맡은 겁니다. 그리고 21대 기재위에서도 예결소위원장은 논쟁이 있었지만 다수당이 맡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운영된 것입니다.

야당에서 소위 협상 과정에서 처음에는 재경위원장을 맡은 정당이 예결소위를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만든 관례인 재정경제소위와 예결소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당 시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시간을 또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오기형 위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제 종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상임위원장이 어느 쪽 당이나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야

당에서 조세소위, 야당에서 재정소위 그리고 예결소위 위원장을 다수당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논의가 상식적으로 저희가 과한 주장인가 묻고 싶습니다.

소위가 3개월 때 그 3개 위원장 중에서 2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과반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어서 그 지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점검과 논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좀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구성안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양당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전체회의에서 길게 공방을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들 발언하셨으니까 한 분 정도씩만 더 발언하시는 걸로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기형 간사님, 아 다르고 어 다른 의사진행발언 굉장히 듣기가 거북했어요.

소위 위원장의 배분은 야당 여당, 다수당 소수당의 문제가 아니었고 조세소위를 선택했을 때는 청원소위를 맡고 재정경제소위를 맡았을 때는 예결소위를 맡고 이게 21대, 22대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따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세소위를 맡았을 때는 청원소위를 맡고 경제소위를 맡았을 때는 예결소위를 맡는……

그런데 지금 국가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결소위원장 좀 양보하면 안 돼요? 국가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더군다나 오늘같이 여야 합의도 없이,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상임위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을지훈련 있지요, 각 당 의원총회 있지요, 본회의 예정돼 있지요, 그런데 합의 없는 상임위를 이렇게 개최해 가지고 더군다나 소위 배분에 대한 갈등을 연장시키고 이게…… 물론 조승래 위원장님의 해외출장 일정 이런 것 때문에도 연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상임위 개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한 후에 개최를 해야지요. 더구나 오늘은 국회의 여러 가지 일정이 중복되는 하루잖아요. 이런 날 상임위 개최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배분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세소위를 맡았던 정당이 청원소위를 맡고 재정경제소위를 맡았던 정당이 예결소위를 맡았어요.

○문진석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김영환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보세요. 국가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예결소위 이것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하는 것도 동의를 못 하는데 지금 무슨 국가경제를 들먹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실제 소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요. 한번 제가 표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상훈 위원님,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수당이자 여당입니다. 여당이고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소위 기준을…… 물론 견제와 균형도 좋지만 책임성 문제가 있잖아요. 소수당이 반절반절 나눠 가시는 건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박수영 간사님이 기억을 똑 바로 하시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재경위 불출석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출석을 구조적으로 막은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장 때입니다. 5분 전에 통지해 줬어요, 회의 소집을. 회관에서 뛰어오는 데 5분 걸립니다. 그랬더니 회의 끝내 왔어요. 그게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 기억하시지요?

지금 8월입니다. 결산심사 곧바로 해야 돼요. 예산안하고 같이 결산심사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회의는 결산심사를 충분히 하고 또 생각하시는 바 충분히 여기서 문제 제기하시고 차례대로 예산심사까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결산심사를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서는 의사진행을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안 잡을 테니까 위원장 배분은 좀 균형 있게 해야지.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발언은 이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공개적인 공방은 좀 자제를……

○배준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것은 일정을 다시 잡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승래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저는 국회법이……

○배준영 위원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서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할 때는 서로 간에 막 고성을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준영 위원 고성은 안 지르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조승래 발언을 끼어들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식적으로 논의를 하자고요.

어쨌든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양당 간사들과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에 따라서……

○배준영 위원 합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물론 합의는 안 됐지요. 협의는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십시오.

○위원장 조승래 제가 그전에 전체회의를 열면서도, 그때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월 18일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되니 결산국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내 주시고 협의를 해 달라라고 제가 분명히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결산은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양 간사들과 협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했고, 물론 안타깝게도 의사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협의 끝에 오늘 잡힌 전체회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이것은 지금 그걸로 끝내기로 했으니까요. 더 이상 발언은……

○강민국 위원 아니아니,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릴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잠깐만요.

어쨌든 결산심사를 하기로 통보를 해 드린 바와 같이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일정을 늦추고 정상적인 회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15분)

○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 세제개편안도 이렇게 엉망으로 졸속으로 하다가……

○위원장 조승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 위원회 개최도 이렇게 졸속으로 엉망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조승래 앉으세요. 배준영 간사님,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해외출장 일정 조정해서 우리 정상적인 회의 하게 해 주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위원장 조승래 앉아 주세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 응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퇴장하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 퇴장하라고 그러시네요. 응할 수 없으면 퇴장하라고 그러니까 퇴장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것은 국민의힘이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정상적인 회의를 하게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조승래 지금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승래 이게 왜 졸속입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지금 의총이 열리고 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도 졸속으로 했는데 이렇게 위원회도 졸속으로 해 가지고 대충 땀땀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위원장 조승래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시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을 진행할 테니까 토론 과정 속에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의사를……

○위원장 조승래 제가 의사일정 다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다수당의 횡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승래 이게 어떻게 다수당의…… 소수당의 횡포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소수당이 어떻게 횡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저희는 1년, 1년씩 하자라는 안도 내놨어요.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세제가 넘어오는데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결산안을 빨리 정리해야 세제개편안도 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하게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과한 겁니까?

○위원장 조승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오늘 이 세제개편이 중요한데 본회의가 있는 날 이렇게 전체회의를 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세제개편안을 졸속을 하더니 위원회도 졸속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졸속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조승래 의사진행에 협조 좀 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당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잠정 협의는 안 하겠다고 예전에 과방위 간사 할 때 하셨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위원장 조승래 그때는요, 그때는 야당 간사가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때는 그거고 내로남불입니까?

○위원장 조승래 아니지요. 협의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전화하신 게, 통보한 게 협의입니까?

○위원장 조승래 협의지요. 두 간사가 협의했고 제가, 위원장이 협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리고 어제 심사기일 정해 가지고 소위 일정을 정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그게 협의입니까? 그건 협의 아니에요.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방해입니까? 방해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이 나가라면 나가지, 뭐.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다음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무시하는데 나갑시다. 나갑시다.

○위원장 조승래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도대체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세제개편안 개편안 줄속으로 하더니 위원회도 이렇게 줄속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끌고 나가시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승래 앉으시든지……

○배준영 위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알아서 하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정부조직 개편 이전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획재정부 결산 개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결산 개관입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40조 4871억 원 증가한 383조 288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2조 3709억 원이 증가한 39조 58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484조 3591억 원으로 예산현액 487조 1212억 원보다 2조 7620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39조 9931억 원으로 예산현액 41조 5230억 원 대비 1조 5299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예비비 5425억 원 불용 등 총 1조 5258억 원 불용과 다음 연도 이월 41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규모는 15조 3618억 원으로 예산현액 15조 3808억 원보다 190억 원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 원리금 회수 등으로 333조 8122억 원을 조달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예수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3조 4083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 원리금 회수 등으로 2조 2771억 원을 조달하여 개도국 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9조 1027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면허료 및 수수료,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6904억 원을 조달하여 특별인프라펀드 등 기금사업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정부예금 회수 등으로 112조 1346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조 6743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금융자산 44조 5454억 원 증가, 유·무형자산 8554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5조 4938억 원 증가한 550조 5429억 원이며, 부채는 차입부채 129조 4852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9조 4244억 원이 증가한 1216조 579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7714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기획예산정보화 예비비 등으로 69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에 국가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국민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선·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데이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35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3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629억 원 중 5382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247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은 2870억 원, 부채는 4억 원, 순자산은 286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가산금과 벌금 등 세외수입으로만 편성하고 있으며 총 2964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30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가산금 23억 원 등 세입예산 대비 130억 원을 초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5년 세출예산은 2조 40억 원이고 그중 2조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정보화사업비 등에서 29억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은 12조 5748억 원, 부채는 5조 9738억 원으로 순자산은 6조 60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이종욱 관세청장 이종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가치이자 과제로 두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무역외환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경제국경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1003억 원이며 58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587억 원으로 그중 6512억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5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자산은 1조 5432억 원, 부채는 1499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393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조달청은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 조달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술선도성장, 공정성장, 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7377억 원을 편성하고 7730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411억 원 중 7274억 원을 집행하고 13억 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12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자산은 2조 5827억 원, 부채는 116억 원이며 순자산은 2조 57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 I 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수입 결산입니다.

첫째, 정부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개정사항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세법 개정안 제출 시 재원 조달 방안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관리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양 지출수단 간 유사·중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당초 계획한 조세·재정지출 연계 관리체계가 충실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세·재정지출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실질화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시

그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 완료한 심층평가는 예산안 요구 기한 이후인 6월에 최종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요구할 때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심층평가를 적시에 완료하여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특별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자금을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모펀드를 별도로 조성하여 모펀드에 계획액 1000억 원을 전부 출자하였는데 이로 인해 모펀드 운용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문제가 있고,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가 출범한 이후 펀드가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한 실적이 부진하므로 출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결산입니다.

7페이지 중단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인 세무플랫폼 대응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전용을 통하여 신설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용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나 최종 반영되지 못한 사항으로 이를 전용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결산입니다.

10페이지 중단입니다.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공사 추진 과정에서 법령상 건축공사 사전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전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설계 및 착공 등 공사가 순차적으로 지연된 문제에 더해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계획설계·중간설계에 대해서도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실시설계비로 일괄 집행하였으므로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추후 비축창고 신축·재건축 추진 시 사업 절차 및 예산 편성·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1쪽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세입예산 대비 수납 실적이 크게 저조한 문제가 있었고 물납주식 매각의 어려움에 따라 보유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국세물납주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관세조치 대응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 등에게 금융지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본을 추가 출자하였는데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사업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적기에 완료하지 못하여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약 7개월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사업이 절차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수요를 근거로 계획액을 대규모로 증액하였으나 실제 지방채 인수 신청 규모가 이에 미달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수요 검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소관 결산입니다.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2025년 시범 도입된 핵심진단은 통계품질 저하 요인을 외부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정성적 진단체계로 핵심진단의 실효성은 개선과제가 실제 통계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핵심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안의 이행 여부와 반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관세청 소관 결산입니다.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송화물 증가로 X-ray 판독요원의 건당 판독시간이 감소하고 전자상거래 통관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개장검사 비율은 4.1%에서 1.6%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필요한 인력·장비 여건을 확충하여 X-ray 판독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위해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개장검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위원들이 다 퇴장을 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배분 기준, 원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교섭단체가 3개 있을 때의 상황과 양당, 교섭단체가 2개 있는 조건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조건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서 그동안 원칙과 기준 또 관례가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이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회의는 계속 공전시켜야 되는 것이나? 저는 전체회의에서 결산·법안·예산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되 오기형 간사님께서서는 배준영 간사와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

○**윤후덕 위원** 자료 요청해도 돼요?

○**위원장 조승래** 하십시오, 자료제출 요청이요.

○**윤후덕 위원** 미안해요.

데이터처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해요.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1가구 1주택의 비거주, 거주를 분리해 가지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처에서 주택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 소유를 위한 거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조승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윤후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소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택 소유의 주택가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가액. 그래서 이 세제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분 중에서 특히 서울지역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들에 대해서 비거주하고 거주하고 한 거에 대해서, 특히 비거주에 대해서 이 주택가액에 대한 분포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1세대 1주택의, 서울에서는 191만 호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거주 인구는 한 48만 호 정도 돼서 한 24%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거기는 빌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9억 원 이하하고 9억 원 이상의 주택가액에 대한 분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지 이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자료를 오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끝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지금 윤후덕 위원의 자료 요구를 어떤 자료인지는 이해는 하신 거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자료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오전에 바로 하기가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데이터처가 아니라 재경부나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데이터처장님?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를 구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늘 오전에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필요하면 혹시 데이터가,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나 재경부 자료를 참고해서라도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오늘 결산하는 데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일정 정도 반영이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제도 하나 개선하는 데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위원장님, 초선들의 열정적인 정책활동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질의 보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제도 하나 변화가 조세지출결산서가 예산 때 제출되던 게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효과가 일정 정도 반영이 돼서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하나하나 변화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총리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조세지출 예타 제대로 안 거치는 거 그거 심층평가 이런 부분도 함께 마지막까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세입경정, 감액, 세입 했잖아요. 저는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 세수 펄크 난다 그래서 세입경정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10조 3000억 안 했으면 8조 5000억 세수 펄크 또 났습니다. 그러면 23년도 56.4조, 24년도 30.8조, 25년도 8조 5000억이라는 세수 펄크가 또 났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차례대로 가고요. 또 돌려막기 했었을 거고요.

순차적으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을 텐데 이걸 막은 게 사실은 감액 세입경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한 1조 8000억 정도 초과세수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과정에서 세입경정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결정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몇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일단 국세감면율 있잖아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라는 게 사실은 무빙 에버리지잖아요. 기존 3년 평균 플러스 0.5%p 이렇게 플러스 한 건데 이게 과거에 3년 많이 해 버리면 이게 평균이 올라갑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국세감면 한도를 맞춰버린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수치는 높습니다. 보면 23년도에 69조, 24년도에 70.5조 그다음에 25년도에 76조 그다음에 26년도 전망이 80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수치는 지속적으로 조세지출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국세감면 한도를 그 이전에 많이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평균

이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세지출 노력도 안 했는데 이를테면 국세감면한도를 지킨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지출 관련해서는 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연평균 증가율이 16년도부터 8.3% 정도인데 재정지출이 6.5%지요. 그리고 조세지출 비중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8.9% 조세지출 비중이 했던 게 25년도는 10.1%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요구된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분위별 귀착효과를 분석을 해 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조세지출을 우리가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우리가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 개선효과라는 게 있지요, 재분배효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 가처분소득을 정부가 얼마나 보전해 주면서 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리느냐, 이게 불평등 개선효과잖아요.

그런데 22년도 데이터가 23년도 것밖에 안 나와서 이게 거의 꼴찌입니다, 18.2% 개선 효과. 그런데 23년도에 더 떨어져요, 17.6%. 그러면 귀착효과로 분석을 해 보면 일단 보험료공제가 있는데 한 이게 7조 5000억 정도 해요, 조세지출만. 그런데 소득 10분위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이 51.5% 조세지출 효과를 얻어 가요. 그다음에 9분위가 16.7%, 8분위가 11.5%. 거의 최상위 계층이 90% 이상을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금보험료공제, 10분위가 46.1, 9분위가 21.4, 8분위가 12.6.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연금보험을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특히 높은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이런 것들은 있는 분들이 일정 정도 정부예산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의료비 지출을 그 조세지출을 기획예산처에 넘겨서 건강보험의 보장효과를 더 높이는 측면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이게 노후소득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연금보험료가 한 4조 7000억 해요. 그러면 이것을 기획에서 노후소득 보장으로 활용하면 전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

그다음에 주택자금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에 세법개정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공제를 받는 거는 10분위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기회의 요인들이 더 많고 거기에 예산까지 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LH에 자본금으로 넣어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사회투자효과에서 더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고 그래서, 제가 보면 조세지출의 내용들을 재정지출로 변환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경제정책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셔서 가지고 조세지출 결산서가 처음으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분석해 보다 보니까 보험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료공제라든지 연금보험료라든지 신용카드공제라든지 아무래도 10분위 고소득자들이 신

용카드 많이 쓰고 또 연금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귀찮사유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제개편하면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을 일부러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기는 교육비공제라든지 주택자금공제라든지 자녀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정지출로 가는 경우, 더 합리적인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받고 재정지출해서 하는 것까지도 이번에는 이렇게 결산 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재정지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출, 조세지출 간에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하는 정합성을 맞추는 노력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아주 좋은 질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의 집단 퇴장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고 그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고 관례에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위 구성을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소위, 예결소위도 구성을 해서 예결소위에서 좀 더 자세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예결소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 질문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저번에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하고 또 일인당 부담금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되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완성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동안 유관부처와의 내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정부의 단일한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진석 위원 정리됐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래서 오늘 아까 비공개 당정을 통해서 기본적 설명을 드렸고 조만간에 유관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회를 갖고 향후에 그것을 예산 일정과 맞춰서 저희가 국민들께 또 국회에 상세히 보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문진석 위원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으로 어제 끝난 겁니다.

○문진석 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정부안에서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진석 위원 진행 과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 저렇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정부안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문진석 위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지요. 완성되지 않는, 완결되지 않는 얘기를 밖으로, 외부로 유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걸 보고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의견을 개진을 해도 잘 받아 주지 않잖아요, 부처에서. 국회가 무슨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회 상임위도 의무가 없는 거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정부가 원팀으로 단일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단일한 그런 사정은 알겠는데요. 정부가 조율해서 단일안을 발표하는 그 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들도 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허용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오늘 유관,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각 위원장 간사들까지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유관 상임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지금 다 완성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장관님께서도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전혀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기재부장관만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견이 모아져야 그것을 설명할 수 있지 정부 안에서 이러저러한 각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당연히 입법부나 또는 당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위원** 세제개편안도 사실은 마찬가지로요. 세제개편안도 국회 상임위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했으면 국민적 비판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국회 상임위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과거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정책이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국회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정에서, 관계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하되 말씀하신 좀 더 적정 시점의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에 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 준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건 또는 미래대응기금이건 또는 교부세나 교부금 개편 등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의견이 국회 예산안 시점에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종 정리되다 보니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안도걸 위원 예.

○위원장 조승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도걸 위원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결산 총괄 지표를 제가 좀 봤는데요. 하여튼 지금 국세수입 관련해 가지고 보면 예산 대비해서는 8.5조 원 세수 결손이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차 추경, 우리 정부 들어서 2차 추경 때 우리가 감액 추경을 좀 했었고 그 기준에 보면 1.8조 원이 늘어나는 셈이 됐네요, 세수가. 그래서 다행히 지난 정부 때 3년 동안 내리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해서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여하튼 그 추세가 멈추고 우리 정부 들어서부터 초과세수로 다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 반등을 보이면서요 아마 그런 부분이 세수에 반영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그 경기가 반등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또 빠른 신속한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재정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회복이 되고 세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도 크게 뚫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듯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서 경제를 살려야지 세수가 늘어나고 수지가 개선되는 그러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보니까 총 지출이 있잖아요, 총 지출 기준을 보니까 2차 추경 때 우리가 703조였는데 지금 결산은 684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19.2조 정도의 세출이 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주요 내용이 뭐냐, 19.2조 중에. 그러니까 그중에서 14.3조가 주택기금에서 많이 줄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이지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실수요자들이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정책자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고 전세자금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한 14조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 대책 차원에서 지출을 조절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자금이야말로 무주택자들이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그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14조 정도 줄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 견해 좀 듣고 싶네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2025년도 결산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예산처가 소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서민 또는 임대주택, 공적주택이 충분한 공급에

필요한 그런 주택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한 재원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집행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회가 편성해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특히나 중산·서민층의 생계 안정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러한 불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홍근 장관님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는 다 명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거고요.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와 달리 반대편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사실은 서울 중심, 특히 강남 중심의 부동산값의 폭등을 잡기 위해서 큰 뼈대가, 항상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니까 그런데 이 불뚱이 전혀 다른 데로 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이 세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지방 집부터 다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서울 집 팔고 서울에 매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불뚱이 서울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제가 아파트 매물 증가율을 한번 따져보니까 1위가 경북이예요. 경북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2.5%. 그리고 그 뒤에 전남·전북이 2.4%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완전히 반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게 아닌가, 수도권 집값 잡으려다가 가뜰이나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더욱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발표하면서 지방 세컨드 홈 과세특례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인구감소지역만 했는데 이제 인구감소관심지역 아홉 곳도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두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정책을 폈어요. 저는 그 정책을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홉 곳 주택거래량을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주택매매 건수가 과세특례를 시행하기 전 5년에 비해서 오히려 14% 감소했어요. 오히려 이걸 시행하면 서울 사람들이 세컨드 홈으로 이 지역에 와서 집을 살 걸로 예측하고 이 정책을 펴고 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지방 보전책으로 그 정책을 폈는데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 지역구가 이번에 감소지역, 위기지역에 포함됐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인구감소지역도 됐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집 사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늘겠다’라고 했더니 외지인 매수세가 특례 시행 전보다 무려 46.7%가 급감했습니다. 정책이 타겟으로 삼는 그 수요층이 오히려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빼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늘지도 않고. 더 줄어 버려요, 이게. 이게 어떤 현상이냐,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집 사게 하겠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집 사러 오기는커녕 지방 집부터 던져 버리는 거지요, 내가 해당되니까, 서울 집 지키려고.

저는 세컨드 홈의 과세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봉책 수준으로는 저는 수년간 누적된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반전시키기가 어렵다.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 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 불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책을 더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지방만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총리님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세제특례 확대 등 세컨드 홈 지원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과격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지방도 살리고 지방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장관님, 저는 곧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말씀하신다고, 5극 3특 성장 엔진 발표하신다고 하셨지요? 잘 준비는 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범부처 차원에서 지금 지방 시대위원회 그다음에 재경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여기에 단지 지방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어디다 주겠다, 뭘 어디다 주겠다, 공공기관 어디다 배치한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여기에 살려고 하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과감한 지방 부동산 세제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지방에 안 살아요. 물론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저도 하고 문화생활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뜨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기관 이전하거나 산업을 배치해도 달랑 혼자 왔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서 KTX 표 끊기만 어려워요, 사실은 지방이 다, 실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생산적 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시야를 넓게 보셔서 장관님과 부총리님께서 이게 항상 부동산 정책 펼 때 강남 3구의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끝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남 집을 몽땅 올

려 버려 가지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가야지.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도 집을 많이 짓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공급 대책을 또 마련해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도 있고 하는데 또 가겠다, 다 가서 공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제 얘기만 주로 했는데 한말씀해 주시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하면서 거주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나 하면 보유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보유를 하려고 하니까 수도권 쪽에 안 살아도 보유 쪽에 인센티브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몰리고 보유, 안 살아도 내가 보유해도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40%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왜곡을 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위원님 하신 대로 종전에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라도 집을 한 채 더 사는 경우는 1주택에서 빼 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두 채를 들고 있을 때 한 주택으로 하라 그러니까 지방을 팔아 버리는 역작용이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역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례를 굉장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산업이 내려가야 됩니다, 산업. 그래서 5극 3특 중심의 그 지역에 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을 배치하고 산업이 배치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생기고 그리고 정주여건이 형성이 되고 문화가 가고 의료가 가고 교육이 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 지방이전 노력도 가속화할 거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도권에 과밀해서는 진짜 더 이상 이제 한국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기구 위원님 질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 들께서 오늘 집단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가 거의 두 달 세 달 동안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신속히 정상화돼서 민생현안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소위가

운영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세청장님, 지금 현재 7000명이나 추가로 인력을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지금 6000명은 활동하고 있고요. 4000명 지금 추가로 충원해서 9월부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추진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거의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제약이 있습니다.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 법을 상임위에서 신속히 통과시켜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이 법이 왜 조속히 입법화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한 9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 흩어져서 징수를 하다 보니 체납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징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징수율이 꽤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 효율 혁신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통합징수하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여기구 위원 빨리 법안이 마련돼서 통합징수법이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구 위원 저도 결산·예산 관련해서는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박홍근 장관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구 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방안 지난 3월 10일 날 공개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또 5월 29일부터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 과제 중 분석기준 정밀화 부분은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서는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서 철도·도로 사업의 장래 교통수요 구축 및 적정 운영비 산정과 연계하여 경제성 분석기간을 확대 검토하겠다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아직도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님, 이 개정이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발표한 대로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또 KDI 등 수행할 때 제가 그 필요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이 정확히 제가 어떤 부분인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게 지금 경제성 분석기간을 확대할 경우에 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도로 사업이 지역별로 많이 있어요. 당진도 있어서 제가 지금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당진에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알고 계신가요? 들어 보셨어요? 당진-천

안 고속도로인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미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 되기 전에 내부적인 검토가 많이 마쳐진 상태이고 아마 발표를 철도와 국도를 포함하여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가 발표를 했고 이 지침 개정을 위한 TF가 지금 구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역가중치 어떻게 하겠다, 지역균형가중치 5% 올린다, 경제성을 어떤 부분은 5% 낮춘다 이런 것을 그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각각 어떻게 적용할 건지, 특히 이런 도로…… 말씀하신 이런 것에 분석기간을 좀 더 연장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한 10%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이 TF를 속도 있게 가동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이 개정되면 당진도 타당성 재조사 신청할 계획이고요. 올해 안에 이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가중치가 기존 2.5%에서 3.2%로 0.7% 상향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세수가 반도체 훈풍으로 내년 580조 원 정도가 건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 좋은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장관님들? 부총리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9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여 조 원 대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님,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청년들 이런 분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계부채는 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제규모가 커진 다든지 또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늘어납니다만 저희들은 GDP 대비 이 총량이 얼마나 늘어나냐는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 관련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도 오히려 너무 타이트하다, 가계부채 관리가. 집 좀 사려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좀 완화해 달라는 주장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현실과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짜 현실도 감안하고 또 가계부채가 상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맞춤형으로 필요한 데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가지고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승래**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경제부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세제개편안을,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반응이 크고 여러 얘기가 많이 들어 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오늘까지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전체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비거주에 대해서 비거주에 대한, 좀 확대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게 사실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비거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번 부동산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거주와 비거주를 새롭게 정립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에서 그것을 반영하니까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주하고 비거주,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게 세법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주에 대한 세법에 법으로 정확하게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거주라는 얘기도 용어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법에도 비거주라는 얘기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주기간에 대한 간주 사유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열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거주라 함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는 경우를 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으니까 법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개념에 대한 것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세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연령공제, 보유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최대 50%, 15년 되면 50%까지 공제가 되니까 지역에서 다 보유하는 쪽, 안 살아도 보유만 해도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식의 인센티브 구조가 돼 있어서 아까 비거주라는 개념보다는 보유요, 살지 않는 보유.

○**윤후덕 위원** 실거주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정립을 하려면 거주에 대한 개념을 본법에 정의를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신설이라도 넣든지. 그렇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1세대 주택의 거주하고 비거주하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큰데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특히 영향권에 미치는 게 서울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 이런 데인데…… 그러면 특히 서울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주택의 소유에 대한 통제 이거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서울에서 1세대 1주택은 191만 주택의 소유자가 있어요, 약 191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구청별로 저쪽 구청에 있는지 이쪽 구청에 있는지 이렇게 분

리하니까 거기서 비거주자 정도가 한 50만 명 정도가 파악이 돼요. 이걸로 그냥 그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191만에 대해서 이게 50만이면 이게 24%·25% 정도가 비거주자예요,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번 세법개정안에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의 영향력이 거기에서 25%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25%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가 그중에서 세제에는 양도세는 12억까지, 양도가액이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하에 해당하는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들은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공시지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가액에 대한 분류된 데이터를 저는 제시해 달라는 얘기해요, 내 얘기는. 그래야지 이것을 국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중부세도 그렇지요, 중부세도 1세대 1주택인데 비거주자는 지금은 기준이 12억인데 그거를 9억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 분포를 알고 있어야지 이 정책을 판단할 때 그리고 그 정책을 수정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판단하잖아요?

이게 개혁적인 방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판단하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부총리께서도 비거주에 대한 입법예고에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비거주라는 게 어디에 얼마큼 어떤 분들인지, 그게 1가구 1주택 중에서 공시지가 9억 이상에 대상되는 분들이 5%인지 3%인지 그런 가늠을 해야 정책 판단을 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중부세 과세 대상 가구가 63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가구 1주택자는 한 15만 정도가 중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15만, 이 중에서 일부는 비거주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거주하고 보유하고 차등화하기 위해서 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15만 중에서 얼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맥시멈 15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중부세 세법이 1세대 1주택자도 연령공제·보유공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만 해도 50%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다 이렇게 보유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윤후덕 위원 장관님,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고 개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비거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게 1%인지 3%인지 5%인지 또는 0.1%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야……

데이터처장님, 그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줘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있기는 있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원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비거주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취학이라든지 해외 유학 이런 경우는 다 거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주 중심……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다 이렇게 보유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 보유해도 인센티브 받으니까 이것은 거주용 주택의 정상화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이상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거주용 주택으로서 정착하는데 그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청년 고용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8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놓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후를 내다보면, 이렇게 청년의 반이 노는 상황을 10년 후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적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부모 잘 만나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해요. 어느 책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60개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교를 가고 10개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그래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책보다도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특별히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대응기금에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청년 일자리 정부 정책이 몇 개인지,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형이나 총 규모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보니까 13개 정책을 가지고 2.7조 원, 그러니까 2조 7000억이 올해 예산 규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거니까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자꾸 늘어는 왔는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는 징후는 없단 말이지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처장관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심층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더구나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급으로 촘촘하고 전주기와 단계별 청년정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것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별도로 가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개별 사업 평가는 해왔고요. 그러나 이번에 좀 더 본격적으로 청년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종합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의 문제의식은 그냥 교육이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교육을 해도 갈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정확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육은 시키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갈 데를 만들어 줄 것이냐가 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가 될 때 청년의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형 일자리 부분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업의 공채 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공채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는 포스코가 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 공채 제도가 없어지면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결국은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경력직을 뽑는 거고 지금 중소기업은 대기를 위한 일종의 인력 공급처 비슷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공채 제도를 한시적이더라도 부활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저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중소기업에서 이삼 년 동안 더 근무하게 되면 내일채움공제라고 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했었는데 그때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해 보니까 보통 대학을 졸업해서 한 11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첫 직장을 구하는데 여기에 들어왔던 청년들은 한 5개월 정도로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있다 보니까 한 이삼 년 후에 목돈 이삼천 만 원이 만들어지니까 중소기업에 이삼 년 동안 이상 체류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없애 버리거나 왜곡시켜 가지고 지금 이 제도가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제도를 한번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떤 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소위 공공기관 혁신한다고 해 가지고 한 1만 2000명 정도의 자리를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도 절반밖에 공공형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분야의 일자리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공공 분야의 일자리인데 그것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윤석열 때 1만 3000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가지고 어떻게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창업국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처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공공형 일자리 부분은 공공국이 재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업 공채 제도 한시적인 재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장관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정부와 모두의 창업을 중기부가 1차로 했고 국민적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2차 캠페인을 지난번 추경 등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창업국가를 위한 대대적 투자를 저희가 함께해 나가면서 청년들에게는 좀 더 여러 가지 트랙을 만들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대기업이나 또는 대학 등하고 연계해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가 아끼지 않고 투자할 생각이고요.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도도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 이후에 일자리 창업 문제와 그 이후에 청년들의 결혼 출산 보육 이런 전 단계에 대해서 신규 사업들을 내년도에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자리도 제가 촘촘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일경험을 하고 일자리를 얻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업, 공공형 일자리,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하여튼 진짜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고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취업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더 찾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더 마련하고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청년들의 인력을 넣어서 뭔가 지금 국제 체납하는 것처럼 비용 수익 대비 편익이 난다면 어디라도 청년들을 최대한 넣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한층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이것 외에도 더 찾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답변 고마운데요.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하자면 창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창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 얘기가 나와서 저도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예술인 증명을 통해서 기본 보험료를 지원받는다는지 이런 정도의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술을 전공한 분들이 예술 관련 학과를 나와서 본인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창업입니다. 밴드를 만들고 극단을 만들고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창업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체부와 상의를 해 주시면 젊은 예술가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으니 그 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입니다마는 그런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팀 단위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반영해 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결산심사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안이어서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제 보도를 보니까 ‘우리 정부의 이란전 불개입,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논란에 한미 경제협력까지 혼선’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안보동맹 조정 이게 말하자면 한미 경제협력의 추가 비용으로 전가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담해 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남준 위원 그 2개의 파트가 반드시 같이 결합돼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 조치들 이런 것은 그것들대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의 대미투자 같은 경우에는 양국 간의 상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 공급망 안정화 혹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보동맹 조정으로 인해서 추가 투자를 논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동맹의 거래화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동의하시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 한미 간의 어떤 경제협력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문제없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안보동맹을 거래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더 강한 한미 동맹의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한미 양국은 대규모 투자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그리고 2000억 달러의 전략 투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발표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는 또 중요한 안전장치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일 경우에도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 마련을 해 놔고 또 한국의 연간 달러 조달액에도 200억 달러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남준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도의 거래조건은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협력 협상 틀이 탄탄하게 설정이 돼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외국 조선사 선박 두 척 건조 허용을 하고 이런 것들, 기존 군함의 자국 외 건조 금지 조치 고쳐 가면서 조선산업 재건 조치에 나섰다 이런 것들은 K-조선에는 분명하게 호재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내의 투자는 안보의 대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서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여부를 이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경제적 판단의 문제다, 기업의 경제적 판단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미 투자는 공여가 아니다, 한미 간 공동 산업경쟁력 프로젝트다 이렇게 규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보동맹의 협력과 조정은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고 또 한미 경제협력은 경제성과 산업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투자 논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투자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협상단이 또 미국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발표할 수 있고 또 국회에 보고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준 위원** 국회와의 소통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 발전 지원하고 또 우리나라 그리고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라고 하지요,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돼야 하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남준 위원**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이 EDCF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

지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한 국가의 EDCF 지원 규모가 급증을 하고 또 관련 사업들 또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그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해 보자 이런 취지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EDCF 사업이 그간 얼마나 불투명하고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DCF 사업이 투명하고 또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당한 청탁이 개입될 여지가 훨씬 적었을 것이고 그러한 의혹이 설득력을 잃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또 청탁이 들어와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더라도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 왔다면 책임 소재가 좀 더 분명했을 것이고 사업의 발굴이나 심사, 승인, 사후평가 이런 단계에서 부당한 결정들을 걸러 낼 수 있는 이런 이중, 삼중의 견제장치가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EDCF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있었고 또 수출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 검토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정보를 미리 공개한다든지 정책실명제를 한다든지 사업이력제를 한다든지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한다든지 내부신고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개선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면 더 보완해서 EDCF가 짚짜미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투명·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도 강조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본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부총리님, 사실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을 들어 보셨을 텐데 그 책을 읽어 보면 내용이 너희에게 정의를 알려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의란 무엇인지 알려 주겠다가 아니라 책 한번 읽어 보면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정의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인데 대한민국헌법 119조,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 맞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준석 위원 그리고 2항에 약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 그게 경제민주화 조항일 텐데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많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투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이준석 위원 좁은 의미로 지금 하는 아주 구체적인 조치들로 봤을 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부는 지금은 거주를, 거주용에 대해서 하는 주택시장을 마련하겠다는 하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계속 이것저것 하나 썰러 보는 식으로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통계적으로 어떤 걸 볼 때든 과적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변수도 맞는 것 같고 저 변수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합쳐 가지고 그것 다 고려하면 되겠다 하면 과적합이 돼 가지고 프랑켄슈타인 같은 게 나와 가지고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사실, 저는 아까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교란시킨다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것에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맥락에서 선의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투기행위가 무엇이냐를 지금 계속 하나씩 건드려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처음에 건드려 봤지요. 다주택자도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예외를 상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 사람은 왜 시골에 집이 두 채 더 있지, 한 채 더 있지 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투기꾼이 아니라 효자였던 거예요. 부모님이 사실 집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고. 뭐 알고 봤더니 상속받은 집이어 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집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를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다주택자라는 지표가 처음에 보였던 상관관계보다는 계속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급기야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1주택인데 비거주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는 게 이미 예외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부동산 세제가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 보유를 거주로 바꾼 겁니다.

○이준석 위원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건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보유만 해도 세금을 이렇게 깎아 주고요.

○이준석 위원 공제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보유만 해도 공제를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수도권에 보유를 하려고 하는 이게 인센티브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거주로, 보유를 거주로 전환하는 겁니다. 거주만 하면 똑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거주라는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간다 이러면 엄청난 이전이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사이, 사실 이런 건 대단한 삶의 터전의 이전은 아닐 텐데 이번에도 보면 이러한 조항들을 하면서 시군 경계 이런 표현들을 막 쓰더라고요, 예외사항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원구에서 양천구로 가면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거기서 서울시 안이기 때문이에요……

○이준석 위원 그러면 광역시는 하나를 통으로 시로 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준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어 갑자기 직장이 김포공항이 돼 버렸다 그러면 거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직장 이전의 요인이라든지 해외 유학을 간 다든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입증이 되면 그건 거주로 인정을 해 주고요.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오히려 촘촘하게 짜려고 그러면 수많은 예외사항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과적합 비슷한 상태가 돼 가지고 의미 없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당장 정부에서도 우려되는 게 지난 한 몇 달 사이에 우리가 들었던 정부발 정책 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기롭게 6월 달에 발표된 것이 호남지역으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겠다. 800조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러면 그에 맞게 충분한 수도권의 숙련된 인력들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집을 산 시기에 따라 가지고 사자마자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년 유예를 사실상 준 것 아니겠습니까, 3년까지는? 그런데 왜 3년이지요, 또? 혹시 3년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무한정하게 모든 걸 인정해 주기 어려우니까……

○이준석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게 왜 3년이나는 어떤 근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3년 같은 경우는 해외 근무라든지, 3년 정도는 그쪽에 가 있지만 그사이에 충분히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준석 위원 이게 다 기업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광주 가 가지고 야까 말했던 내 기대 수익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업에 이전 비용이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엔지니어 꼬실 때 ‘야, 너 갔다가 올라오더라도 부작용이 없게 할게. 손해 보는 것 없게 할게’ 이런 걸 다 만족시켜야지만 엔지니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계속 자발성 강조하는데 그 자발성이 생기려면 손해는 안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부효과들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예측이 안 된 거냐, 예측이 됐는데도 밀어붙인 거냐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님, 이번에 이것 거주자 1주택 관련해서 규제하겠다 하면 전세 물량이 줄 것은 예측하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최대한 가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규제를 때리면 실거주자들이 들어가려고 할 테

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이고 그래서 전세를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라는 예측이 당연히 돼야지요. 이것 예측 못 하고 정책 하면 다 짐 싸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정책적 판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세정의를 가져오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세입자들이 전셋값을 수억 올려 줘야 되고 아니면 전세를 못 구해 가지고 내가 갑자기 안 사던 집을 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정책적 판단을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택 공급을……

○이준석 위원 그것 세액공제한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손실이 다 만회된다고 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 그런다고 해석하면 계속 보유를, 인센티브로 가는 스킴을 계속……

○이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책적 선택을 할 때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건데 이번 판에서 저는 이걸 부총리님이 시야 안에 넣고 판단하신 거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판단한 겁니다.

○이준석 위원 그 말인즉슨 조세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물량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감행한 것은 맞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주택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스킴을 거주로 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보유를, 그냥 들고만 있어도 혜택을 받으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이준석 위원 아니, 부총리님, 제가 부총리님이나 정부의 선의를 의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걸 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다 하고……

○이준석 위원 다만 이것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감내해야 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최대한……

○이준석 위원 일부 감경하기 위한 조치들은 고민하지만 이건 어쨌든 될 걸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전세 물량 감소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식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빨리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거주 아파트……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우리가 잡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피해를 봐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게 지금 이 정부 내에서 너무 가깝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뤄지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절대 가볍게 보지 않고요.

○이준석 위원 그러셔야지요, 그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 주고 시가 20억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면제해 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여기서 때린 건 고가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인데, 피해를 입는 건 양쪽인데 임차인이 더 아프겠습니까, 임대인이 더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피고 더 공급을 확대해서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늘 야당이 결산안 상정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통상 8월 24일까지는 결산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9월 2일까지는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상정도 안 하면 국민들께 이게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오늘 결산안 상정이 부득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늘 종래의 관행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고 특히 종래에 이미 합의됐던 것들은 합의된 대로 소위 2개를 구성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러면 예산안은 이후에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정하고 또 심의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께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 세수 관련된 건데요. 오늘 뭐 많은 논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신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일정 정도 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공공부지에서 괜찮은 공공부지를 토지임대부로 해서 거기 위에다가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 주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일정 정도 좀 위치가 좋은 곳에서 그걸 분양을, 분양이 안 되면 또 공공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된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하는 것과 또 방금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과 또는 필요한 경우, 대출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청년·신혼 주택공급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런 데에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추가 세수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한 규모로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우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이런 공적 주택의 추가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부족하고 더딥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돈이 없어서의 문제냐 부지가 없어서 문제냐 행정절차가 많이 걸려서의 문제냐, 이걸 따져 봐야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동안 주택기금을 포함해서 해 왔는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면 저는 그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 문제와 절차의 문제에서 병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이걸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년도 청년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청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도 예산을 포함시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실은 몇몇 절차적인 병목현상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해소도 필요하고 또 부지를 적절하게 확보해서 빨리 푸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예산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흥근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재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세제 관련해서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일부 사항들 좀 크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큰 흐름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포인트는 공정과세이지 이를 통해서 수급관리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주거 안정 그다음에 공평과세입니다.

○오기형 위원 공평과세가 제일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실은 공정과세, 응능과세 이런 요구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중에서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중에서 특히 자산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자산 양극화 해소의 방법으로서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뿔뿔한 집 한 채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그동안 뿔뿔한 집 한 채 관련해서 이것들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좌절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논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최근의 언론보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6억의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실거주 10년 했는데 56억이 됐다. 그러면 그게 약 40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실거주인데 세금을 더, 한 2억 4000에서 9억 4500으로 확대되는 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내지는 억울한가,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논쟁을 바라보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 40억의 예산이…… 여전히 30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게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투자 수익률을 비춰 봤을 때 수용 가능한 거냐 또는 이 세금 자체가 과도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서로 논쟁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

공정하다고 느낄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 종래의 똥똥한 집 한 채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을 각종 언론의 사실이고 칼럼이고 비판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또는 다른 부작용이 있느냐, 구분해서 논쟁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의식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취지였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인데 예측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되면 현금흐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래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했던 것이 있는데 제도가 바뀐 것이라면 그게 사회적 공감에 있으면 수용을 하겠지만 또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종부세 논쟁 중에서 저는 어떤 담론적인 지점은 예측 가능성과 시민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부가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제개편이 이루어져도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2분의 1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금년에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그게 내년도에는 2분의 1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온전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일단 정부가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양한 말씀을 듣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정부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토론의 내용을 좀 더 유연하게 흡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경청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요 고령자들에 대해 지방에 갔을 때 집 파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유예가 아니고 단계별로 가는 거라든지, 지방의 주택에 대해서 1주택에서 빼 주는 것, 광역시를 제외하는 부분, 이런 부분 경청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경청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하여간 예측 가능성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이광재 위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요. 속개 시간은 국민의힘 위원

들 회의 복귀 여부 그리고 본회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속개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결산심사에 복귀하셔서 심사에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누가 맡을 것인가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가 파행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조세소위와 나머지 재정경제법안소위는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된 부분은 합의가 된 부분대로 의결을 해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많지 않습니까? 빨리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는 이런 식의 낡은 정치 문법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간사와 오기형 간사님하고 하셔서 협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결산심사 복귀 여부 그리고 본회의 진행 여부를 보면서 속개 시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0인)

장민국 김남준 김상훈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박수영 배준영 안도걸 안상훈
어기구 오기형 윤후덕 이광재 이종욱 이준석 이춘석 임이자 정태호 조승래

○청가 위원(2인)

김성환 윤영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허 장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세제실장 조만희
국고실장 황순관
경제정책국장 유병희
민생경제국장 이주섭
공공정책국장 이상윤

정책조정관 주환욱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흥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국고정책관 허승철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차관 조용범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정책기획관 박봉용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재정혁신정책관직무대리 임영진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오은실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기획조정관 양순필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정동욱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박해영
 기획조정관 유재준
 자산과세국장 공석룡
 관세청
 청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2026. 7. 30.
정성호			
이성권		국민의힘	2026. 8. 6.
李憲昇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5)

이상 2건 7월 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7.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7)

7월 28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8)

이상 2건 7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1)

이상 5건 7월 3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3)

이상 4건 8월 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9)

이상 4건 8월 4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0)

이상 8건 8월 5일 회부됨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2026. 7.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2)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8. 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8. 5.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3)

이상 7건 8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1)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2)

이상 6건 8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정정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1)

이상 8건 8월 1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5)

이상 3건 8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4)

이상 2건 8월 1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9)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026. 8. 13.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9)

이상 3건 8월 1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544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545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546호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법제처장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2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3호	제정	재정경제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4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